

【 2017.11.16(목) 강원일보 】



장은 16일 오전 11시 충북 충주 시 대한건설공 제조합 건설경 영연수원에서 열리는 '2017 대표자 경영연 수'에 참석.

【 2017.11.16(목) 강원도민일보 】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 장은 16일 오전 11시 건설공 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에 서 열리는 2017 대표자 경영 연수에 참석한다.

【 2017.11.16(목) 건설경제 】

아하! 그렇구나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

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는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도급인은 감정 시를 기준 시점으로 주장하고, 수급인은 공사의 완성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주장한다. 이는 하자보수채권의 변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와 같은 문제인데, 하자보수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바로 그때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이다.

“원고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인도 일인 1985. 4. 26.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의 하자보수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비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하자보수비를 도급인이 건물을 인수한 때 또는 하자 발견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것이고 오히려 하자보수청구 시 또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사리에 합당하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고 설시하였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시점이다.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가 기준 시점이다.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 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 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